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항목으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용도(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를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 사업에 명시하고,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공항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공항계정의 명칭을 세출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항공공항계정’으로 수정하며, 그 밖에 법률용어에 적합하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안 제5조의2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안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계정”을 “항공공항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사업 지원”을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도심항공교통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사업 지원”을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계정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교통 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u>공항계정</u>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현행과 같음)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 ----- ----- ----- --- <u>항공공항계정</u> --- ----- -----.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u>공항계정</u>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② ----- ----- ----- <u>항공공항계정</u> ----- -----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9. 「 <u>여객자동차 운</u>	9. (개정안과 같음)
	<u>수사업법」 제49</u>	
	<u>조의5에 따른 여</u>	
	<u>객자동차운송시</u>	
	<u>장안정기요금</u>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10. (개정안과 같
	같음)	음)
② 교통체계관리계	② -----	② -----
정의 세출은 다음	-----	-----
각 호와 같다.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1. ~ 11. (개정안과
	같음)	같음)
	<u><신 설></u>	12. 「 <u>여객자동차</u>
		<u>운수사업법」 제</u>
		<u>49조의5제2항에</u>
		<u>따른 택시 감차,</u>
		<u>택시운수종사자</u>
		<u>의 근로여건 개</u>
		<u>선 등을 위한 지</u>
		<u>원</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개정안 제12호
		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공항계정의 세	제6조(공항계정의 세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입 및 세출) ① 공	입 및 세출) ① (현	세입 및 세출) ①
<u>항계정의</u> 세입은	행과 같음)	<u>항공공항계정</u>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1. ~ 10. (현행과 같음) ② <u>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항공안전법</u>」, 「<u>항공사업법</u>」, 「<u>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해외 진출지원 및 그 외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 ---. 1. ~ 10. (개정안과 같음) ② <u>항공공항계정</u>----- -----. 1. ~ 3.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 제4호와 같음) 4. ----- 「<u>항공사업법</u>」 및 「<u>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u>」-----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	---	---

<u><신 설></u> 5. (생 략) ③ (생 략) 제8조(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 ① · ② (생 략) ③ 도로계정, 철도 계정, 교통체계관리 계정, <u>공항계정</u>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 입금 외에 예산에	6. 「<u>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 률</u>」에 따른 도 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 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 (현행과 같음)	5. ----- ----- ----- -----도 심항공교통의 연 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도심항 공교통 활용 촉 진 및 지원----- ----- 7.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항공공항계 정</u>----- ----- ----- -----
---	--	--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u>공항계정</u>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 ----- -----. ④ ----- ----- ----- -----<u>항공공</u> <u>항계정</u>----- ----- -----. 부 칙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계정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u>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u>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98
----------	------

발의연월일 : 2024. 11. 8.

발 의 자 : 김도읍 · 김예지 · 장동혁
박정훈 · 구자근 · 정점식
박성훈 · 조배숙 · 조지연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
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항목으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용도(택시 감차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를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
출 사업에 명시함.

나.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공항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공항계정의 명
칭을 세출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항공공항계정’으로 수정함.

다. 그 밖에 법률용어에 적합하도록 자구 등을 수정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
장안정기여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시스템
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u>공항계정</u>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 ----- ----- <u>항</u> <u>공공항계정</u> ----- -----.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u>공항계정</u>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	② ----- ----- <u>항공공항계정</u> ----- -----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u>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u> <u>운송시장안정기여금</u>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12. (생 략) ③ (생 략)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u>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u>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u>항공공항계정-----</u> -----. 1. ~ 10. (현행과 같음) ② <u>항공공항계정-----</u> -----. 1. ~ 3. (현행과 같음) 4. 「<u>항공안전법</u>」, 「<u>항공사업법</u>」 및 「<u>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드론 인프라 구축·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u> 5. 「<u>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u>
--	---

4. · 5. (생 략) ③ (생 략)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② (생 략)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u>공항계정</u>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u>공항계정</u>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u>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u> 6. ·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항공공항계정</u>----- ----- ----- ----- ----- -----. ④ ----- ----- -----<u>항공공항계정</u>----- -----.
---	---